

제172회(임시회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

제2호(부록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

목 차

1.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면
 ○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면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1255
--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07년 3월 13일

제 안 자 : 안재홍 의원 외 6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연간 회기 총일수와 정례회 회기를 우리 구의회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회의 연간 회기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“80일”을 “120일”로 변경하고, 단서를 삭제 (안 제2조)
 나.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·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“40일”을 “50일”로 변경(안 제3조 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(정례회), 제41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
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
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4.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80일”를 “120일”로 하고, 단서를 삭제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40일”을 “5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연간 회의일수)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<u>80일</u> 이내로 한다. <u>다만, 회의일수의</u> <u>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3</u> <u>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</u> <u>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.</u>	제2조(연간 회의일수)----- ----- <u>120일</u> ----- . (삭 제)
제3조(회기) ①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 회 개최하고,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·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<u>40일</u> 이내로 한다. ②(생략)	제3조(회기) ①----- ----- ----- <u>50일</u> ----- ----- ②(현행과 같음)